#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46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권향엽・김기표・이병진

정동영・한창민・박지원

소병훈 · 허성무 · 이상식

김성환 · 안태준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약 없이 재판관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한 것이어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각 3명씩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헌법을 관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도록 하며,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법률 제 호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지명하여야 한다"를 "지명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2항, 제3항"으로, "개시된 후"를 "개시된 즉시 인사청문을 시작하여 집회 개시일로부터"로 한다.

이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정년의 도래를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 3개월 전에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국회가 임기 만료 또는 정년의 도래를이유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 3개월 전에 인사청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통령은 국회의 선출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생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 (2) ----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 ----지명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판관(국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 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문을 요청한다. 이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정년의 도래를 이유 로 대통령이 임명(국회에서 선 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하거나 대법 원장이 지명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 3개 월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여 야 하고, 국회가 임기 만료 또 는 정년의 도래를 이유로 선출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 는 정년 도래일 3개월 전에 인 사청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 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 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 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신 설>

(생 략) <신 설>

⑤ <u>제2항, 제3항</u>
-개시된 즉시 인사청문을 시작
하여 집회 개시일로부터

- ⑥ 대통령은 국회의 선출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회가 선 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 ②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 무를 행한다.